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정례회
'18. 11. 23.(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8년 11월 05일

3.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현행)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

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 조제2항)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함.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2항)
 -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지역특산물 생산단지·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도시가스사업·관광단지 개발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다.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법적 근거

- 감면기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에서 별도의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감면기한을 정할 수 있음.

2. 조항별 검토 내용

- 안 제2조제1항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이나 세대원을 함께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3년간 시각장애인(4급)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	52	21	28	15	12	11	12

- 안 제3조제1항은 전통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은 없음.

※ 건축된 건축물(고객지원센터 등)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시·군)로 비과세

- 안 제4조제1항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75에 대한 경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3년간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87	1	3	2	84	-	-

- 안 제5조제1항은 농공단지에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에 75에 대한 경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3년간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201	7	165	-	-	1	36

- 안 제6조제1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에 50에 대한 경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3년간 감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합 계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	195	13	62	33	130	3	3

- 안 제9조제2항은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세 100분의 50에 대한 경감을 2020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은 없음.
※ 증평 애듀팜특구, '17. 12. 14. 관광단지 지정으로 관광시설 신·증설 없음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2018. 10 .25.)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